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고확인증을 재교부 받으려고 할 경우 관련 절차가 미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법제처 발굴 과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보완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승계와 관련하여 처분 효과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권익위 권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 신고내용 중 중요 사항만 변경신고(안 제86조제1항)

나. 자구수정(안 제86조제5항)

다.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 재교부 신청 절차 마련(안 제86조제10항 신설)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근거 수정(안 제86조의2제5호)

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설정(안 제90조제1항)

바.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0조제4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후단 중 “신고내용”을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제9항에 따라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6조의2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계한다”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제8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

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하거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촌민박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생략)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

-----.
6. (현행과 같음)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생략)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②·③ (생략)

<신설>

----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

1. (현행과 같음)
2.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제8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을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1591